

신청절차



1 상담 · 접수
(읍 · 면 · 동 주민센터)



2 소득 및 자산조사 · 보장결정



3 급여 지급
(시 · 군 · 구청)



알아두세요!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 ·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2월 3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 **교육급여**는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장제·재산급여(총 7종) 지원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치료 등) 제공**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